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군 보 건 의 료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정경두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전

1. 의결주문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직업군인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군 단체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, 직업군인이 아닌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군 단체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있어서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어,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등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입영대상자 정보 송, 수신 및 예방접종 이력 송, 수신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병역법」 제75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병사 軍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'21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관계부처(기재부, 금융위원회)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4. 8. ~ 5. 17.)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)</u> <u>① 법 제4조에 따라 국가는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군 복무기간 동안의 교육훈련, 업무 수행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방부장관(국방부장관의 권한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)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병적번호, 입영일자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u> <u>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군인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보험 가입 및 해지</u> <u>2. 보험 관련 정산업무</u> <u>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</u> <u>④ 기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</u>

<u><신 설></u>	<u>제1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</u> <u>국방부장관(국방부장관의 권한·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) 및 병무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57